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21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나316040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7. 11 선고 2021가단21968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박한결

피고A

변론 종결2023. 5. 23.

판결 선고2023. 7. 11.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19.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7. 7. 및 2019. 8. 20. B2)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2017. 7. 7.자 약정을 이하 '제1약정', 2019. 8. 20.자 약정을 이하 '제2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관	C은행	C은행
보증금액	90,000,000원	180,000,000원
보증일자	2017. 7. 7.	2019. 8. 20.
보증기한	2022. 7. 6.	2020. 8. 19.(이후 2021. 8. 19.로 변경)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가 정한 위약금,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또는 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B은 2021. 1. 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출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1. 4. 26. B을 대위하여 C은행에 합계 214,214,720원(=제1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63,166,716원+제2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151,048,004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제1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56,291원을 회수하여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20. 10.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0. 21. 피고 앞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부동산임의경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23. 4. 17.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1,041,7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신청에 의한 위 배당금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카단1118호)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대출원금의 변제가 연체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21년 4월경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제1의 가. 3)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적극재산 합계 87,700,000원(이 사건 부동산)]

[소극재산 합계 684,950,000원]

1	C은행	50,000,000원
2	G조합	55,000,000원
3	H (주)	23,041,000원
4	I (주)	27,053,000원
5	C은행	29,861,000원
6	J조합	169,995,000원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30,000,000원
합계	684,950,000원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운영하는 법인의 적극재산도 B의 재산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과 그가 운영하는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위 법인의 재산을 B의 적극재산으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 가) 채무자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에게 돈을 대여한 2019. 11. 또는 2019. 12.경부터 10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B과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피고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B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의 배당금 액수를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별지2 기재와 같다)을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인경

별지

- 1)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법인등기부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
- 2)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재된 'D'은 B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보이고,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B 개인임은 명백하다.